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배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539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위반사항 통보 대상 영업에 체육시설업 · 게임제공업 등 추가 ...	3

I. 개요

1. 조배숙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53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조배숙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6. 26.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를 위해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일부 등의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그 위반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에 따라 해당 영업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소 제공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시설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과 같은 특정 업소 내에서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될 경우에는 해당 범죄자만 형사처벌을 하고, 해당 영업소에는 아무런 제제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체육시설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운영하는 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마약범죄를 위해 그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장이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영업소에 대한 영업의 취소나 정지처분이 따라오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49호)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위반사항 통보 대상 영업에 체육시설업·게임제공업 등 추가

□ 수사기관의 장이 체육시설업 및 게임제공업자가 법률상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해당 영업의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4조의2제1항제4호·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①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실질적 운영자를 포함한다)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3조제11호를 위반(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② (생략)	제44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①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② (현행과 같음)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수사기관의 장이 식품접객업·숙박업·노래연습장업의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법 제3조제11호¹⁾를 위반(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영업의 허가 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개정안은 위반사항 통보 대상 영업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업과 게임제공업 등이 마약 관련 범죄에 이용될 경우 해당营业을 관할하는 행정청이 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반 국민을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이해됨.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①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실질적 운영자를 포함한다)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3조제11호를 위반(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다만, 해당 통보가 실효성이 있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의 근거법률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행정처분의 근거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사항이 명확히 규정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두 건의 개정안³⁾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⁴⁾.

□ 또한, 안 제44조의2제1항제5호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게임제공업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44조의2제1항은 “영업소”의 운영을 전제로 하는 규정인바 물리적으로 영업소를 갖추고 운영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으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그리고, 개정안은 통보 대상 업종은 확대하고 있으나 통보를 받는 관할 행정청의 범위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유지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등록 체육시설업인 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의 등록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등록·신고권자에는 특별자치도지사도 포함됨.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대로 법 위반 사건 발생시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 44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대상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549호,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540호,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4) 이외에도 노래연습장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541호, 조배숙의원 대표발의)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의 경우 국민들이 체육지도자 등의 관리 아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건전한 시설로서 마약 확산 장소로서의 위험도가 높지 않고, 현재까지 체육시설에서 마약 범죄가 발생한 사례는 확인된 적 없으므로 개정안의 체육시설 관련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안에 동의함.

- 체육시설업과 게임제공업 등이 마약 관련 범죄에 이용될 경우 해당 영업을 관할하는 행정청이 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은 국민들이 체육지도자 등의 관리 아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건전한 시설로서 마약 확산 장소로서의 위험도가 높지 않고, 현재까지 체육시설에서 마약 범죄가 발생한 사례는 확인된 적 없으므로 개정안의 체육시설 관련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모바일·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정의 규정으로, 해당 조문을 인용한 부분은 영업을 규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2조제6호의2로 변경하여 실제 물리적 마약 확산 경로가 될 수 있는 오프라인 영업소만을 규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대한약사회) 최근 청소년 및 일반 대중이 자주 이용하는 PC방,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마약류 매매 또는 투약 장소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반사실 통보 대상에 해당시설을 추가하여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보건 안전을 강화하려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상 업주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이용객에 의해 마약류 관련 범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순히 해당 시설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특히 수사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4